

[일련번호 : 92]

양 천 구

시 정 요 구

제 목 어린이공원 관리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소홀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과

내 용

1. 업무개요

◻◻과는 「자동차관리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이의제기에 대한 법원 확정 과태료 재판의 집행위탁 처리 등 과태료 부과·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에 따르면 ①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②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관리위탁) 및 ◻◻과에서 수립한 2023~2024년 「어린이공원 관리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연 2회 조경팀장 외 4명이 공원청소 및 시설물 관리상태, 관리위탁 사항 등에 대한 준수 여부를 실태점검하며, 점검결과 미흡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위반내용을 어르신사랑방에 통보한다고 명시하였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공무원의 의무) 제1항은 ‘모든 공무원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호·관리할 의무를 갖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기록물의 등록·분류·편철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기록물의 등록)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기록물을 생산하거나 접수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록물의 등록·분류·편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조1항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의 교부는 반드시 지방보조사업자 명의의 보조금 전용통장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고, 제10조에 따라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민간일 경우,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을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하도록 하고 그 사본을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유 해당 시 기존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1. 100만원 범위 내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2. 기존 통장의 잔고를 0원으로 하여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9조에 따르면, 정산 결과 집행잔액과 지방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반환토록 조치하고, 지방보조금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통장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지방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과에서는 2023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어린이공원 관리위탁단체 관련 공고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어린이공원 관리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연 2회 실태점검을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각 동주민센터로부터 제출받은 근무일지, 지출내역서, 통장 사본 등 증빙서류를 기록물시스템 등록 및 편철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였고, 이로 인해 2023년 보조금 정산서류가 부존재 하는 등 기록물 관리를 소홀하게 하였다.

1개 사업당 1개의 통장을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일부 경로당에서 기존 경로당 운영비 통장을 통해 어린이공원 관리위탁 보조금을 수령하여 기존 금액과 혼재되어 관리되었고, 회계연도 종료시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모든 이자를 반환토록 해야함에도 2023~2024년 이를 반납받지 않았다.

특히 ○○○○경로당에서 관리하는 ○○어린이공원이 2024년 9월 공사로 운영이

중단되어 9월분 관리지원비(245,000원)가 과지급되어 12월분 관리지원비를 지급 제외 처리하였다. 경로당에서는 12월에 운영비를 사용하지 않아 정산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통장에는 미집행한 지원금 245,000원이 남아있게 되었다. ◻◻과는 지원금에 대해 적정 집행여부를 정산서류로 확인하여야 함에도 ○○○○경로당에서 12월 정산서류를 미제출한 것 대하여 제출을 촉구하거나 집행잔액 발생에 대한 반납을 요구하지 않아 지원금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통장에 전년도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상태로 2025. 3. 5. 2025년 3월 지원금(245,000원)을 지급 받아 경로당에서는 2025. 3. 31. 200,000원 및 50,000원의 운영비를 집행하고, 2025. 4. 3. 240,138원의 운영비를 집행, 2025년 3월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총 490,138원을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1] 어린이공원 관리지원사업 위탁 공고 및 점검 소홀 내역

구분	위탁업체 공고	점검(연 2회)	비고
2023~2025년	미공고	미실시(23~24년, 25년 상반기)	직전감사 반복지적 사항

[표2] 기록물 관리 미흡 내역

해당연도	기록물 관리 미흡사항
2023년	- ○○동 2개소(○○경로당, ○○경로당) ○○ 1개소(○○경로당) ‘23년 보조금 정산 서류(활동일지, 지출증빙서류 등) 일체 부존재 - 3, 4, 9~12월 전체, 5~8월 일부 47개소 경로당 활동일지 원본 전체 미보관 - 기록물 미편철 및 기록물관리시스템 미등록 (직전감사 반복지적)
2024년	- 기록물 미편철 및 기록물관리시스템 미등록 (직전감사 반복지적)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5. 조치할 사항

◻◻과장은

교부하였으나 미집행한 2024년 어린이공원 관리지원금 집행잔액 245,000원을 환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공원 관리지원금 교부·정산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정)